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
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형제·자매의 사망시 경조사휴가,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의 유급일수를 확대하는 등 군인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,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성인지교육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형제·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(안 제12조제1항제9호)
- 형제·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함.
- 나.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(안 제12조제7항)
- 육아시간 사용대상을 기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고,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함.
- 다.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(안 제12조제10항)
-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,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.
- 라. 성인지교육등의 내용 관련 조항 마련(안 제24조제2항 신설)
- 성인지교육등에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제2항의 성인지 교육,

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.

마. 기타 용어 정비(안 제12조제2항, 제6항, 제7항)

- 출산휴가, 모성보호시간,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용어·문장으로 개선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9호 중 “1일”을 “3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게”를 “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”으로, “승인하되”를 “사용할 수 있으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받을”을 “사용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“5세”를 “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”으로, “24개월”을 “36개월”로, “받을”을 “사용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중 “(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)”을 “(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을 더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해당 군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 1일을 더한다.

제24조 제목 “기본권교육의 운영”을 “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교육등(이하 “성인지교육등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

2.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
 3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
 4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
 5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조의2제3항제1호부터 4호까지
 6. 그 밖에 성인지교육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
- 제24조 중 “제2항·제3항”을 “제3항·제4항”으로 하고, 제4항(종전의 제3항)의 “기본권교육”을 “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1항제9호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군인의 경우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느 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
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
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
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
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⑥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⑦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⑧ ~ ⑨ (생략)

⑩ 제9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,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사용할

⑦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
 년----- 36
 개월-----
 ----- 사용할 -----

⑧ ~ ⑨ (현행과 같음)

⑩ _____

- (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

인인 경우 또는 해당 군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 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3일)까지 유급으로 한다.	을 더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.
⑪ ~ ⑬ (생략)	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해당 군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 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 1일을 더한 다.
제24조 (기본권교육의 운영)	⑪ ~ ⑬ (현행과 같음)
① (생략)	제24조 (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 등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(신설)	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인 지교육등(이하 “성인지교육등” 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	1.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
	2.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
	3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
	4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

② (생략)	5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 조의2제3항제1호부터 4호까지
③ 구체적인 기본권교육의 대상, 내용,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 한다.	6. 그 밖에 성인지교육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내용
	③ (현행과 같음)
	④ -----기본권교육 및 성인 지교육등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	
연 락 처	(02) 748 - 6149